

전주지방법원 2017. 5. 24 선고 2016가단3328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7. 4. 12

판결선 고 2017. 5. 2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1,29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26, 27, 28, 14, 15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'가' 부분 29㎡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, 위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주문 기재 대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, 그에 인접한 D전 337㎡(이하 '이

사건 인접토지'라 한다) 외 1필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1993년 무렵 위 각 토지의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지상 1층 주택 69.03㎡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,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(이하 '이 사건토지 부분'이라 한다)을 침범하여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,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1에서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,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2005년 5월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 주택의 진입로로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부지로 점유,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,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피고도 담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툰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, 피고의 나머지 주장 사실은, 그것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원고 소유 주택의 진입로로 점유,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, 사용하기로 하였는데,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일부를 원고 소유 주택의 진입로로 점유,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,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예영

별지